
第81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閉會中)財務經濟委員會會議錄
第4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5年11月17日(金) 午後5時

場所 財務經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金庫運營에關한條例案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金庫運營에關한條例案(梁敬淑 議員 外 1人 發議) ... 4면

(17時 03分 開議)

○委員長 文錫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1回 臨時會 閉會中 第4次 財務經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이번 會議는 서울特別市金庫運營에關한條例案을 審査하기 위하여 1995年 11月 17日 鄭水華 議員 外 13人의 委員會 開議 요구가 있어서 地方自治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하여 開議하게 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金庫運營에關한條例案(梁敬淑 議員 外 1人 發議)

○委員長 文錫珍;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金庫運營에關한條例案을上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同 條例案은 梁敬淑 議員이 書面으로 發議하고, 金信浩 委員이 贊成해서 會議規則 第52條에 의거 正式 議題로 成立되어 우리 委員會案으로 採擇 議決코자 하는 案件입니다.

먼저 梁敬淑 委員님께서 同 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敬淑 委員; 梁敬淑 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金庫運營에關한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第1條 目的은, 地方財政法 第64條 및 同法施行令 第72條의 規定에 따라 서울特別市公金에 속하는 現金 및 有價證券의 관리를 위한 金庫取扱 金融機關의 선정과 金庫 運營에 관한 事項을 規定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第2條 金庫指定은 地方財政法 第6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長이 金庫를 指定하고자 할 경우에는 議會의 審議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議會의 承認이나 議決이 아닌 審議를 받도록 한 것은 地方財政法 第64條에 地方自治團體長이 金庫를 指定하도록 되어 있기에 議會의 承認 또는 議決을 얻도록 하는 것은 法 해석상 論難의 소지가 조금 있기 때문입니다. 金庫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구분하여 指定하되 一般會計 擔當金庫 1個, 特別會計 擔當金庫를 2個 이상으로 하여 市金庫間의 善意의 競爭을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第3條 契約方式에서는 市長이 金庫를 指定하고자 할 때에는 公開競爭方式을 통하여 契約하도록 하였습니다. 地方財政法 第61條에 賣買, 賃借, 都給, 其他의 契約을 締結하는 경우에는 一般競爭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國家를當事者로하는 契約에關한法律 第7條에 의하면 "契約을 締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一般競爭에 부쳐야 한다. 다만, 契約의 目的, 性質,

規模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參加者의 資格을 制限하거나, 參加者를 指名하여 競爭에 부치거나 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關한法律施行令 第26條에 의하면 法 第7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市金庫에 관한 부분은 隨意契約할 수 있다라는 項目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資料로써 委員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따라서 一般競爭이 아닌 隨意契約으로 市金庫를 指定하는 것은 法에 違背되므로 條例에 市金庫 指定時에는 公開競爭方式으로 하도록 明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契約期間은 특별한 瑕疵가 없는 한 3年이하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第5條 金庫選定 基準은 金庫의 안정성과 收益性을 고려하고 市民서비스 강화라는 차원에서 그 基準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對內外的인 信用度, 主要 金融商品別 運用 收益率, 서울特別市民에 대한 便宜 및 福祉增進 寄與度, 資産運用의 健全성 등 財政狀態, 金庫管理 업무에 대한 경험 및 電算能力, 서울特別市와 金庫間의 協力事業推進 能力,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事項으로 金庫 選定基準을 마련하였습니다.

第6條 餘裕資金 運用原則은 資金運用은 예측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第7條 個人信用情報의 보호는 金庫 및 從事者의 對外機密 遵守와 不當한 目的에 使用을 禁止토록 하였습니다.

第8條 資金運用 狀況報告는 金庫의 公金預金運用 狀況을 주

기적으로 金庫는 市長에게 報告하고, 市長은 議會에 報告토록 하여 효율적인 資金運用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第9條 委任規定을 별도로 마련하여 條例施行에 필요한 事項은 서울特別市長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 資金이 효율적으로 運用될 수 있도록 本委員이 提案說明드린 대로 可決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文錫珍; 네, 수고하셨습니다.

同 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이 끝났으므로 효율적인 議事進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同 條例案에 대한 異見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意見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意見이 개진되면 그러한 意見을 들어서, 또 저희가 停會라는 방식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든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意見을 提示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載東 委員님 먼저 해 주십시오.

(「檢討報告는 없습니까?」 하는 委員 있음)

따로 專門委員이 지금 檢討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를 못한 것 같으니까 우선 意見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盧載東 委員;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전에는 市 金庫制度改善 및 運用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行政調查結果를 集約한 그런 報告書를 우리가 만들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論議過程에서 行政調查를 통해서 市金庫銀行이나 市執行部에 상당한 意識의 변화와 경종을 울렸다는 것도 우리가 다같이 공감한다고 서로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지금 서울特別市 金庫銀行에 관한 무슨 條目別 意見이나 이것을 개진하기에 앞서서, 지금 梁敬淑 委員이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契約에 관한 一般論則을 가지고 와서 이것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우리 財務經濟委員會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條例라는 것이, 그것이 결의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成案이 될 경우에 執行部에서 비토하는 바 없이 제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그와 같은 條例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몇 군데 諮問을 구했습니다.

제가 朴相千 議員하고 개별적으로 아주 친분이 있고, 또 張基旭 議員이라든지 몇 분하고도 相議를 했습니다만, 國家를 相對로 하는 契約에 一般的인 그런 하나의 그것이 되어 있지만, 地方財政法에 보면 특별히 이것을 指定하도록 固有權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金庫運營에 관한 條例를 만들어서, 이 上位法令에 위배되는 그런 條例를 만들어서 효력발생이 되느냐 하는데 상당히 疑問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金庫指定에 서울特別市 會議의 審議, 梁敬淑 委員의 얘기는 議決이나 承認이 아니고 그냥 審議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 審議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問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서울特別市 會議에서 回附된 案件을 반드시 承認을 받거나 議決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걸러보자 하는 정도로 가지고 이 條例를 그냥 만든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條例의 實效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條例를 制定을 하는데 本委員은 원칙적으로 反對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冒頭에도 說明을 올렸지만 어느 特定銀行이 80年間 市金庫銀行으로서 契約이 되어 왔다 하더라도 그 동

안 피차간의 상당한 노력과 그런 어려울 때의 협조관계가 유지가 되어 왔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國家産業이 이렇게 발달되면서 모든 분야를 政府가 주도를 해서, 投資關係까지도 전부다 정리를 시키는 그와 같은 일종의 統制經濟式으로 이렇게 우리 나라 經濟가 運營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金利라는 것도 말씀을 올렸지만 이것이 財務部나 財政經濟院, 전에는 經濟企劃院이었는데 이런 데서 거의 다 일괄해서 주도를 해 왔기 때문에 사실 金庫銀行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별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執行部가 어느 정도 長期 預置하는 市金庫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運用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行政調査를 통해서 경종을 올렸기 때문에 소기의 目的이 달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령 이와 같은 條例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市 執行部가 어떻게 預置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책임 있는 行政 次元에서 우리가 다루어야지 이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서울特別市金庫運營에 관한 條例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우선 첫째, 上位法에 위배되어서 問題가 있다. 먼저 市政開發研究院의 鄭世煜 博士도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반드시 問題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만약 執行部에서 비토가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서울特別市 財務經濟委員會 位相에 관한 問題가 됩니다.

이 부분은 委員長께서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경종을 울리면서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저는 전적으로 贊成을 하지만, 이것이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에는 우리 財務經濟委員會에 상당한 問題가 있다 이것을 제가 添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本委員은 逐條審議에 앞서서 원칙적으로 條例가 잘못된 發想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文錫珍; 金勝建 委員님 意見 말씀해 주십시오.

○金勝建 委員; 저도 그 상당히, 지금 앞에 盧載東 委員님이 상당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근본적인 것은 條例를 制定한다 하면 그 條例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契約方式이나 이렇게 죽 보면 金庫 選定基準, 또 資金運用狀況報告, 餘裕資金運用原則,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지금 서울市 執行部 財務局에 가서 이 원칙, 餘裕資金運用의 原則, 餘裕資金 運用時 안정된 金利狀態로 운용돼야 된다, 지극히 맞아요, 내용들이. 내용이 지극히 맞아요, 내용은. 그러나 이 條例를 만들었을 때 과연 條例를 만들어서 무엇을, 이 條例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나 하는 問題는 얘기해 보자고요.

여기 지난 번 討論會 때 問題가 되니까 第2條의 金庫指定, 第2條第1項에서 서울特別市議會의 審議라는 말을 넣어 놨는데 지금 盧載東委員님이 또 지적하셨고, 審議라는 말은 결국 뭐냐 이거예요. 條例를 애초에 만들려고 했던 것과 바뀌서, 단어 한 단어 바뀌서 원래, 원뜻을 훼손시키면서 굳이 條例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地方財政法에 위배가 된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피해 가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쓴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로 핵심되는 내용들을,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이 條例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第2條第1項에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저도 상당히 同感을 하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市 執行部도 분명히, 市中金庫도 분명히 알고 있겠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異議를 提起할 수 없는 내용들이예요. 다만, 이 條例의 핵

심내용은 第2條第1項인데, 第2條 第1項이 法에, 地方財政法 上位法에 위배된다고 했더니 처음에 아니다 그러다가 지금 요 단어 한 단어만 審議로 바뀌서 넣었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條例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市議會 財務經濟委에 도움을 준 것 뭐냐 이것입니다. 條例를 만드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혹자들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本委員뿐만 아니라 모든 議員들의 特權, 特權이라기보다도 가장 큰 權限 中の 하나가 條例 制定權입니다. 저도 條例制定權하고 이른바 소위 말하는 領域을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상대방이 있습니다. 카운터파트가 있습니다. 執行部가 있고, 다른 機關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領域의 침범을 원하지 않으면 남의 領域에 대한 것도 분명히 그것은 존중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자꾸 上位法을 얘기하느냐 하는 것은 제 領域 확보를 위해서 남의 領域을 침범한다는 것, 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한번은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市議員으로서 領域이 어딘가, 이것을 지적을 안하고 모르고 넘어가서 이게 大法院 가서 어떻게 된다는 것은 몰라도, 알고 指摘이 된 다음에는 한번쯤은 정말 深思熟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金洪奎 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金洪奎 委員; 金洪奎 委員입니다.

사실 本委員도 이 條例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 研究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 條例案을 내기까지는 우리 梁敬淑 委員님도 수고 많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지켜 나갈 수 있는 그 法律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條例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地方財政法 第64條에 의하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金庫業務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金庫를 指定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습니다. 이 法에 의하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金庫를 指定하여야 할 義務가 있고, 그러나 地方自治團體長이 金庫를 指定함에 있어서 어느 金庫를 指定하여야 하며, 指定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法律規定이 없습니다. 金庫 指定을 위한 金庫의 선택과 指定의 절차는 地方自治團體長에게 權限이 부여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地方自治團體長은 金庫를 指定할 의무가 있되, 지정한 金庫의 선택권은 地方自治團體長에게 부여된 固有의 權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地方自治法 第15條에 의하면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 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條例는 法令의 범위 내에서만 制定할 수 있을 뿐 法令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制定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地方財政法 第64條에 의하면 地方自治團體長이 金庫를 지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또는 그 이외에 다른 어떠한 制限, 예를 들면 地方議會의 承認 또는 公開競爭入札 등을 거쳐야 한다는 制限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地方財政法이 自治團體長에게 아무런 法令上の 制限 없이 金庫指定權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議會가 金庫 선택 내지 指定에 관하여 議會에 建議나 承認, 또는 公開競爭入札, 기타 어떤 制限을, 쉽게 말해서 구속력을

가하는 條例를 制定한다면 이는 地方財政法 第64條에 위반되어 條例制定 權限의 限界를 벗어난 條例로서 行政訴訟의 대상이 되고, 行政訴訟에 의해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을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梁敬淑 委員님께서 發議하신 서울特別市金庫運營에關한條例案은, 물론 우리 金勝建 委員님께서 第2條第項이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法律的으로는 上位法을 능가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느 某 議員은 지난 번의 討論會에서 日本을 예를 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日本의 예를 들어서 거기는 언제든지 다시 再契約 更新 때에는 꼭 道議會에, 도쿄都議會의 承認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日本을 제가 보면 거기의 法도, 法은 母法이 애시당초 地方自治法에 都議會의 承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日本에서도 전혀 그러한 과정을 지금 현재 거치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日本 도쿄都 副議長하고도, 또 日本 도쿄都의 市金庫銀行인 후지銀行의 幹部하고도 對話를 나눠 봤습니다. 거기에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약 한 30年 前에 후지銀行에서 어느 銀行에서든지 도쿄都에 돈이, 막대한 資金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 주지를 않았는데 후지銀行에서만 유독히 빌려 줬다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法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어느 議員 한 사람 이 문제를 가지고 왜 承認을 받느냐 안 받느냐 舉論한 사실이 없다 합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우리도 현재 불과 한 3·40年 前에는 지금 현재 市金庫가 아마 商業銀行하고 住宅銀行이 되어 있는데 그 쪽에서도 한 3·40年 前에는 서울시에서 돈도 빌려 썼

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랬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銀行에서 얼마만큼 서울市에 배려를 했느냐 하는 차원에서 日本에서는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우리가 討論會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절대 우리 議會가 上位法을 능가하는 그러한 條例를 만들어서는 쉽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난 번에 우리 鄭水華委員이 어느 條例를 내놨었습니다.

(「建議案……」 하는 委員 있음)

네, 建議案 그러나 그것도 역시 그 때 否決되고 말았었습니다.

(「保留……」 하는 委員 있음)

保留됐지요, 保留되고 말았는데 오늘 사실 이 서울特別市金庫運營에關한條例 때문에 갑작스레 오늘 사인을 하고, 또 갑작스레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 條例를 만들면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점을 위해서 갑작스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今年末에 아마 市金庫 再契約을 하는 문제 때문에 이번에밖에, 지금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日 本議會에 上程을 해서 通過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條例 하나 하나를 만드는데는 그 부수적으로 상당한 뒤에 따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래서 또한 잘못되면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이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하게 檢討해서 해야 될 것으로 思料되며, 本 서울特別市金庫運營에關한 條例案에 대해서는, 물론 서울市 財務局에서 모든 問題에 대해서 是正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同感을 합니다. 그러나

上位法에 위배되는 이 條例에 대해서는 本委員으로서는 정식으로 同意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말씀해 주십시오.

○盧載東 委員; 우리 梁 委員께서 그 동안 많은 이 制度에 대한 檢討도 하시고 또 法律的인 측면에서도 많이 염려를 하셔서 成案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몇 가지 事項을, 法律的인 면은 차치하고라도 현실적으로도 이 條例를 12月 1日부터 施行한다 이렇게 해 왔는데, 이렇게 이 條例案에 구성이 되어 있는 대로 公開競爭入札을 부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어느 銀行이 競爭을 할 것이며, 와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銀行이 설령 되어서 市金庫가 바뀌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업무의 혼란은 과연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法律的인 면에서 저는 그런 우려도 하고, 그 다음에 市長이 이것을 리젝트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12月 1日부터 施行을 했을 경우에 한달 동안에 과연 이것이 가능하느냐, 그 다음에 市金庫 業務를 수행하는 銀行들이 第3 銀行이 지정이 됐을 경우에 이거 정말 가능하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深思熟考를 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될 것을 저는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梁委員님 그 점도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는 대충 要約해서 말씀을 올립니다만 다른 委員들께서도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하시고요.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네, 金洪奎 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洪奎 委員; 다름이 아니고 本人이 실질적으로 辯護士를 제가 그 동안 좀 만나 봤습니다만 말로써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議會의 顧問辯護士, 우리 市議會의 顧問辯護士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顧問辯護士 中 박상기 서울地法 前 判事, 또 안범수 前 서울高檢 檢事, 또 임갑인 前 大田地檢 檢事長, 또 法制處 法制官 문영택 辯護士, 이 다섯 분한테 의뢰를 해서 그 분들이 條例制定에 대한 適法性 檢討를 해온 資料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 부씩 나눠드릴테니까 參考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梁敬淑 委員님.

○梁敬淑 委員; 지금 여러 委員님들께서 上位法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條例案을 낸 것에는 上位法에 위배가 되는 부분이 단 한 부분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審議.....」 하는 委員 있음)

審議는요 議決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의논하라는 뜻입니다. 諮問하고 의논하라는 뜻입니다. 金庫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議會하고 의논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權限은 市長이 갖되 의논할 수 있는 것이 뭐가 그게 上位法 위반입니까?

(「法律을 만들면서.....」 하는 委員 있음)

(「들어 봅시다.....」 하는 委員 있음)

아니, 發言 中에는 들으세요, 지금 討論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字句라든지 文句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上位法에 어느 부분이 위배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條項을 들어서 설명하지 않고, 저도 辯護士를

10名 이상 동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 때는. 제가 그 辯護士들 이름을 다 대라고 해도 낼 수는 있지만 10名 이상의 辯護士들을, 우리 나라에서 有數하다는 辯護士들을 다 동원해서 이 條例案을 諮問을 구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몇 條項 몇 號가 어디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안하시고, 上位法에 위배되니까 이것을 뭐 법이 잘못된 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地方財政法 第61條의 아까 부분은 제가 提案說明 때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地方財政法施行令 第72條 金庫設置契約이라는 條가 있습니다. "法 第64條 規定에 의한 金庫의 설치는 契約에 의하여야 한다." "第1項의 契約에는 金庫로 하여금 金庫業務에 관한 法令, 條例, 規則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金庫業務와 관련한 市議會의 條例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法令, 條例, 規定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條例는 없어요. 아무도 制定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條例制定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第7章 契約에는, 契約에 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金庫設置는. 契約에는 競爭契約과 契約의 方法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競爭契約이라는 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 관한法律施行令 第10條 내지 第13條, 第14條 내지 第19條, 第21條, 第25條, 第33條 내지 第36條, 第39條 내지 第47條, 이러한 어떤 경우로 본다라는 條가 있습니다. 그래서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 관한法律施行令을 아까 제가 提案說明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서 國

家を當事者로하는契約에 관한法律施行令에 契約의 方法이 나옵니다.

契約의 方法에는 競爭契約과 隨意契約, 두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競爭方法에서 競爭은 入札方法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競爭方法에 필요한 내용을 즉 規定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入札公告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초점을 둔 것은, 契約에 의해서 해야 되고 公開競爭을 하라고 되어 있고, 또 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라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를 즉 보니까 隨意契約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면 一般競爭을 해야지요. 그러면 一般競爭을 條例가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라고 그랬는데 그 의무라는 것이 이러 이러한 選定基準을 가지고 公開競爭을 하라라고 規定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議員이고 저도 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上位法에 조금이라도, 한 글자라도 위배되는 法을 제가 提案할 意思가 추호도 없고, 그럴 意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없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하시고 上位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을, 條例를 왜 制定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盧載東 委員;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게 法律 論理가 옳으나 그르냐 하는 것은 똑같은 事案에 서도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있고, 유무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一般契約에 관한 準則, 이것은 보통 일반적인 準則이고 이미 地方自治法施行令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여기 東京都에 관한 地方自治法이 아까 李亮漢 委員이 나온 것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地方自治法施行令에 市議會의 議決을 거쳐서 市金庫를 지정하여야 한다, 만약에 自治法施行令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契約이 뭐 隨意契約이 있고 一般競爭, 그것을 지금 모르는 것이 아니고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契約은 일반적인 論理이고, 이미 地方自治法施行令에 그렇게 지정하여 契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上位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梁敬淑 委員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 내 주장이 꼭 합법적이고 네 주장은 法을 모르는 것이니까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저도 대한석유공사에서 법제부장도 하고 안이준 辯護士, 그 다음에 최덕빈 辯護士하고 다 法律相談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몇 번 읽은 것을 가지고 당신은 法을 모르니까 얘기를 하지 말아라, 난 조목조목 따져서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일반적인 論理하고.....

○梁敬淑 委員; 아니, 어느 부분에 위배된다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盧載東 委員; 地方自治法施行令에도 보면 분명히 市長에게 指定할 수

있는 權限, 契約할 수 있는 權限이 되어 있다고.....

○梁敬淑 委員; 施行令이 아니라 그것은 地方財政法에 되어 있습니다.

○盧載東 委員; 地方財政法에.

○梁敬淑 委員; 그 施行令에는 契約에 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盧載東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는 반박을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事案을 두고 辯護士에 孟一右 다 다른 意見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梁 委員이 檢討한 것이 꼭 최선이다 이렇게 우리는 檢討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지금 金洪奎 委員이 정리해 온 것을 보면 여기서도 안 된다고 나오는 그런 有權解釋들이 各 法律事務所에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내 주장이 옳으니까 당신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論理를 전개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네, 梁敬淑 委員님 얘기하세요.

○梁敬淑 委員; 제가 法 그것을 떠나서 아까도 강조했지만 地方財政法施行令에 契約에는 金庫로 하여금 金庫業務에 관한 法令, 條例, 規定에 정하는 바에 따르라고 되어 있는데 條例가 없어서 제가 條例를 만들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고, 단지.....

○盧載東 委員; 그 條例가 契約締結에 관한 준거를 위한 條例냐, 아니면 契約을 하는데 準則이 될 수 있는 條例냐, 條例라는 것이 꼭 이 條例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梁敬淑 委員; 제 말씀 듣고 얘기하세요. 단지 저는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公開競爭이 한 달 안에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附則條項으로서 약간의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 質疑하겠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金相男 委員, 말씀하세요.

○金相男 委員; 우리가 法律에 대해서 意見들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法律專門家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言及을 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上位法에서 制限事項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制限을 上位法이 制限한다는 것은 그것은 法律的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나라 國會와 政府도 말이죠. 政府에서 大統領이 하는 것에 대해서 國會에서 事後承認이나 事前承認받는 것에 대해서는 憲法에 의해서 엄격하게 制限되어 있습니다, 上位法에서. 즉, 國軍을 外國에 派遣한다든가, 또는 緊急命令權을 발동한다든가, 또는 衛戍令이나 戒嚴令을 발동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事前 또는 事後承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牽制機關인 國會와 執行機關인 政府가 서로 균형을 맞춰서 일을 해 나가라는 그러한 사회적인 法規的 法 論理라든가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서로의 權限을 制限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서로 하라는 것이 이것이 法 理論인데 지금 보면 地方財政法에서 또는 施行令에서 團體長, 市長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은 市議會에서 우리한테 事後承認을 받아라, 審議를 받아라 한다는 것은 이것은 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우리 議會는 議會 나름대로 行政事務 調查라든가, 監査院이라든가, 또는 資料를 報告받는다든가 모든 權限을 갖고 있습니다. 그 權限에 의해서 市金庫 運營에 대해서 충분히 牽制도 가능하고, 監視도 할 수 있고, 監督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條例로서 上位法에 어긋나는 그러한 條例를 가지고 자꾸 執行部の 어떤 일이라든가 權限을 侵害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論理로 본다면 우리 條例로서 말이죠, 事務官 이상의 人事에 대해서는 議

會의 承認을 받아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또 뭐 이상의 돈을, 100億원 이상 執行하는 것에 대해서는 議會 承認을 받아라, 모든 것을 條例로서 다 이렇게 規約을 해 놓는다면 議會와 執行部의 牽制와 균형, 이 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法的인 문제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條例를 制定하는 이런 원칙, 어떤 기본방향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각 基金이 열한 가지인데 그 基金 運用에 대해서도 왜 우리 議會 承認을 안 받게 합니까? 그것은 執行部에…….

(「條例……」하는 委員 있음)

條例에 의해서도, 우리가 만든 條例에서도 議會의 審議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만 되어 있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의 條例案이 좀 問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朴南植 委員님 意見 말씀해 주십시오.

○朴南植 委員; 서울特別市金庫運營에關한條例案을 낸 贊成者 金信浩 委員의 말씀을 좀 듣기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辯護士이시고 하니까…….

(「목적만 30초만……」하는 委員 있음)

(「會議進行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重複 質疑는 안하도록 해 주십시오. 한 사람만 자꾸 해서 안되겠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찬성해 주신 金信浩 委員님 意見を 말씀해 주십시오.

郭順英委員님 먼저 하십시오.

○郭順英 委員; 行政事務調査에서 市金庫 독점운영에 따른 불합리성, 關聯法規 미준수 및 市金庫 契約의 타당성 결여, 寄附採納 財産의 불합리한 운영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條例制定을 해서라도 資金管理 혹은 現金管理面에서 現金의 흐름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地方政府의 지출수요에 적절히 대처하는 동시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餘裕資金을 여러 銀行에 競爭入札을 유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特別市金庫運營에關한條例案은 찬성하면서 좀더 강력하게 審議를 承認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委員長 文錫珍; 金信浩 委員님, 意見을 말씀해 주십시오.

○金信浩 委員;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서울시金庫를 財務經濟委員會에서 行政調査를 委任받아서 해 온 성과의 결실을 어떻게 집약시키느냐가 지금 단계에 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金庫에 대한, 金庫가 제대로 운영돼야 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財務經濟委員會에 계신 委員들께서 共感帶가 형성된 부분은 그 부분이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金庫가 그 동안에 제대로 운영되어지지 못한 점들은 行政事務調査報告書에 의해서 是正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것은 事後에 일단 市 執行에 대해서 牽制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보다도 또한 事前에 市 執行이 제대로 運營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法律의 規制가 필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市議會가 事前에 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市議會가 規制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市議會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市가 執行을 하는데 있어서 牽制를 함으로써 꼭 대립된 관계만은 아니지만 牽制를 제대로 해야지만이 市議會의 位相이 설 뿐만 아니라 議會의 기능이 제대로 원활히 진행이 된

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牽制만 한다고 해서 執行의 원활화를 방해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金庫運營에 관한 條例案에 대해서 대체로 찬성을 하지만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修正을 動議하고자 합니다.

金庫指定 第2條와 그 다음에 契約方式에 있어서 여러 委員들께서 異見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地方財政法 第64條第1項에 의해서 金庫를 指定하고자 할 때는 서울特別市長의 權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特別市議會에서 이를 牽制하고자 承認이라든가 議決을 거치고자 하는 그런 意見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法的인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項目을 서울特別市議會的 審議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도 저도 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議會의 位相은 일반적으로 議決機關으로서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지 審議機關은 조금 일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審議機關으로서의 기능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契約方式에 있어서는 저는 同意를 합니다. 契約方式에 있어서 모든 財務經濟委員會에 속하고 계신 委員들께서는 契約方式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行政事務調査를 해오면서 공감대를 가졌던 部分이고, 그것은 단지 현실이 환경만 조성이 된다면 競爭方式으로 해야지만이 事前에 서울시金庫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競爭方式을 도입하는 것에는 同意를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 시점의 현실성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孟一右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까 法律 論爭을 떠나서 契約方式에 있어서 地方財政法에 의하면 公開入札을 원칙으로 하고 있되,

단 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는 方法에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下位 施行令에 의해서 예시를 하고 있을 때, 예시를 보면 어떠 어떠한 경우에는 못하게끔 이렇게, 隨意契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隨意契約을 해온 市 執行部로서는 그러한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商業銀行에서만, 金庫를 管理하고 運營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銀行이 商業銀行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 商業銀行과 계속 隨意契約을 가져 왔다는 그러한 변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競爭體制로 갈 수 있는 환경을, 여건을 만들어서 그러한 競爭體制, 그 條項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條項을 넣긴 하되 어떤 經過規定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經過規定을 뒤야지만이 지금 혼란을 막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經過規定을 두지 않고 그냥 競爭體制 方式을 바로 도입하면 이것은 이상적인 法은 될지 모르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좀 어떠한 장애아를 탄생하는 그런 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法은 되지만 현실에 맞는 그러니까 어떠한 條例의 필요성은 共感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修正案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을 提議하고 싶습니다.

(「第2條第1項에……」 하는 委員 있음)

그것은 保留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第2條…….

○委員長 文錫珍; 第2條第1項에 대해서 修正된 案이 없고 일단 保留하자는…….

○金信浩 委員; 競爭體制方式으로 충분히 그것이 牽制가 되기 때문에 말이죠, 競爭體制만 도입해도 事전에 일단 牽制가 되

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文錫珍; 네, 金勝建 委員님 質疑하십시오.

○金勝建 委員; 아니, 한 가지만 좀 물어 볼게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發議者가 梁敬淑 委員님이니까 제일 잘 아실 것이라 믿는데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물어 봤습니다. 條例의 目的이 뭐냐고요. 이 條例를 만드는 目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目的이 第2條第1項에 핵심사항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더 이것을 좁히면 서울特別市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하는 이 부분이 이 條例의 핵심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審議라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아까 뭐 결정하기 전에 市議會랑 한번 相議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契約期間..... 말만 하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法 常識으로는 定期會가 열리면 우리가 行政事務監査를 할 수 있습니다, 매년에. 그러면 그때 本會議 議決해서 이거 監査하자고요. 잘못되는 것 지적해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執行部에 대해서 이 銀行은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되겠다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그냥 지금도,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行政事務調查할 수 있는 것이, 우리한테 이런 權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意見開陳하고 뭐 相議 정도 해 보려면 이미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梁敬淑 委員이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십시오.

○梁敬淑 委員; 金勝建 委員이 저한테 물어 봤기 때문에 제가 答辯을 하겠습니다.

제가 金勝建 委員한테 그러면 또 金信浩 委員님의 그런 修正에 대한 提案도 있고 또 金勝建 委員의 그런 지적도 있어서 저는 金庫指定 第2條第1項은 削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저는 핵심이 金勝建 委員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地方財政法, 그러면 제가 金信浩 委員님의 修正案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여러 委員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다른 委員님들께서 이 부분이 다 맞고 金勝建 委員님께서도 다른 부분은 다 同意할 수 있지만 第2條第1項이 문제이고 또 金相男 委員님도 또 盧載東委員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第2條를 金庫指定이라고 하고 第1項 자체를 다 削除하고요, 第2條 괄호하고 金庫指定 그리고 ① 金庫는 서울特別市에 本店을 둔 銀行法 第3條의 金融機關으로 한다 하고, 그 다음에 ②金庫는, ②는 지금의 3項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다른 委員님들이 다 同意를 하실 것이라고 믿고 제가 그 부분을 그렇게 그러면 修正動議案을 받아들이고 또 修正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지……」 하는 委員 있음)

(「意見開陳한 다음에……」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네, 意見 일단…….

○梁敬淑 委員; 할 意志가 있으니까…….

○委員長 文錫珍; 郭順英 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郭順英 委員; 제가 아까 말씀하기를 여기의 審議를 承認으로 아주 강력하게 했으면 하는, 저도 이제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느 분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提示했고 어느 분은 강력히 補強해서 이 條例가 制定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이런 제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의 초점은 第2條 第1項에 地方財政法 第6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特別

市長이 金庫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特別市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된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하면 自律競爭, 또 隨意..... 그러면 지금까지는 自律競爭을 안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해서 事前에, 미연에 막겠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을 안했을 때는, 미리 보냈을 때는 이것은 競爭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빼려면 이 條例를 制定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이지요? 이것을 더 강력하게 補強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의견 말씀 안하신 분 意見을 듣겠습니다.

金廣洵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金廣洵 委員; 同僚委員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條例의 입장은 과거에 任命職 市長이 있을 때 條例가 많이 制定되어 있는 입장이고 지금 民選市長의 時代입니다. 그럼 民選市長의 입장이라는 것은 우리 民選時代의, 또 地方自治時代의 條例가 되어 줘야 된다는 것을 먼저 저는 前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市長의 權限이기 때문에라는 입장이라는 것은 저는 현실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人事權에 대한 입장은 그럴지 모르지만 契約締結 이런 입장일 때는 항상 公正해야 된다, 또 競爭入札을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民選時代의 입장은 변화와 改革과 經營이 합리화되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변화와 改革을 싫어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습니까? 그래서 梁敬淑 委員님의 입장은 좀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項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첫째는 善意의 競爭을 해야 된다, 이거

아주 저는 全的으로 同感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銀行間에 자생력을 길러야 될 立場이고 또 서울市에 利益을 銀行이 주더라도 또 그 利益 자체가 투명해야 된다, 과거에는 우물쭈물해서 이렇게 隨意契約을 해서 했지만 이제는 利益을 우리가 받더라도 투명해야 된다, 서울市民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라는 利益을 받고 싶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고요.

아까 金委員님이 말씀하셨던 審議를 받아야 된다, 이 문제점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競爭體制를 도입하려면, 盧委員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좀 시간을 뒤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떤 契約을 연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12月 1日에 施行한다 이것은 상당히 좀 촉박한 時日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님, 제가 잠깐 한 말씀드…….」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잠깐만요, 金廣洵 委員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金庫指定에서 審議部分에 대한 표현 바꾸는 부분, 그것을 말씀하셨고…….

○金廣洵 委員; 날짜…….

○委員長 文錫珍; 그리고 施行日字를 바꾸자 이런 얘기이십니까?

○金廣洵 委員; 네, 나머지 事項은 梁敬淑 委員님이 發議한 立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善意的 競爭을 유도한다, 이 부분은 상당히 民選時代에 우리가 취해야 될 立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同意를 합니다.

○委員長 文錫珍; 다른 분, 意見 말씀해 주십시오.

李廷義 委員님.

○李廷義 委員; 李廷義 委員입니다.

우선 會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자 意見 얘기한 것을 바로 반박하고 이렇게 대답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각자 意見開陳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反對討論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번에 아까 目的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調査業務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80年동안 慣行的이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時代가 변해 가면 변화에 따르는 모든 法律이 계속 바뀝니다. 계속 條例도 바뀌고 規則도 바뀌고, 위의 憲法까지도 바뀝니다. 지금까지 내가 80年을 다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만 20年 동안에 서울市와 商業銀行과의 契約書를 보면 文字 하나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慣行대로 왔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지적을 해서 나오지 않았다면 이것은 앞으로 10年, 20年 가도 그대로 갈수 있다라고 제안들이 나와서 거기에는 서울市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銀行은 서울市가 하는 대로 따라 갈수 있는 그런 法도 있고, 그런 內容도 있고, 또 지금 현재 時代에 맞지 않는 그런 契約書 內容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議會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憲法이 있고 法律이 있으면 그 下位法은 거기에 대한 細部指針을 만들기 위해서 下位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財政法에 있는 포괄적인 내용에, 예를 들어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정에 따르는 어떤 細部的인 내용을 정하는 것이 條例와 規則일 것입니다.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정에 대한 아무런 목적이 없다면 市長이 마음대로 지정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牽制하기 위해서 議會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牽制하기 위해서 條例가 있는 것이

고, 規則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法令의 범위내에서 細部的인 事項이 없는 事項에 대해서 條例를 制定하는 것에 대해 하등의 이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우리가 勸告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條例를 制定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있고, 아까 투명성 또는 慣行的으로 한 것에 대한 補完對策, 편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막는 法, 예를 들면 서울시가 預金을 어디 댄 銀行에다 預置하는데 일방적으로 어느 한 銀行에만 預置했을 때 公務員이 의혹을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條例나 規則으로 制定을 해서 그렇게 그 범위안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委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연의 任務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條例制定은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지금 金庫指定 第1項에 보니까 서울特別市の 審議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特別市長이 固有의 業務를 취급함에 있어서 보면 政策委員會라고 지난 번에 財務局長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政策委員會가 바로 서울市長이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政策委員會를 구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議會 내에 그와 똑같은, 유사한 審議機構를 두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또 아까 말했듯이 固有의 權限인 指定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 指定을 하고 하는 것은 서울市長의 權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金洪奎 委員님께서 辯護士들의 檢討報告를 보니까 承認 이런 것들은 上位法에 위배된다고 하기 때문에 審議機構로서의 役割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그냥 한 번 參考가 아니라, 충분한 審議, 쉽게 얘기하면 지금 勸告案이 나오려고 했던 이제 안정성이라든가, 신뢰도라든가, 효율적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정말 이런 銀行이라면 정말 市長이 指定을 잘 했구나, 또 이러 이런 銀行이 바람직하다라는 審議를 거쳐서 市長이 결정한다면 가장 안전하다 생각될 때 이 審議를 한다는 이 목적은 아주 대단하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見解를 달리해서 서울特別市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는 저는 아주 거기에 확실히 찬성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第3條 契約方式에 보면 公開競爭方式을 통하여 契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指定을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指定의 方法에서 公開競爭方式을 통해서 지정한다고 했는데 公開競爭方式에 의한 지정은 거기에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公開競爭을 그러면 어디에다 기준을 둘 것이냐, 金利를 많이 주는 데만 기준을 둘 것이냐, 그리고 안정성이라든가, 신뢰도라고 할 때 어디에다 기준을 둘 것이냐 하는 수치계산에서 公開競爭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기준이. 쉽게 얘기하면 金利의 효율성만 나타내면 뭐 13%다, 15%다 計算해서 가장 높은 데가 딱 되면 간단한데,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한,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公開競爭方式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지적할 때 公開競爭方式을 통해서 한다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公開競爭方式을 통해서 契約한다 하는 내용에, 競爭方式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되 競爭方式에는 制限을 저희가 두지 말고, 공개경쟁이 아니라 제한을 두지 말고 거기에 대한 細部事項은 서울市長이 規則을 정해서, 쉽게 얘기하면 制限競爭을 한다든가 또는 어떠한 안전도 척도를 기준해서 우리 서울特別市議會의 審議만 거치면 되는 것이니까, 審議를 거쳐서 하면 되니까,

競爭方式에 의하되 그 細部的인 것은 市長에게 權限을 줘서 市長이 그러한 條項을 정해서, 우리가 勸告案도 있으니까, 해서 第9條에 보면 委任規定이 나옵니다. 條例의 施行에 필요한 事項은 서울特別市長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公開競爭이 아닌 그냥 競爭方式으로 한다고 되면 거기에 制限競爭을 하든, 또는 아까 안정에 의해서 하되 그것에 의해서 서울特別市가 심도있게 審議를 거쳐서 우리의 案이 나와서 척도를 해서 市長이 지정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지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第1項은 오히려 저는 부각시켰으면 좋겠고, 第3條의 公開라는 말을 뺐으면 하는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文錫珍; 李亮漢委員님 意見 말씀해 주십시오.

○李亮漢 委員; 會議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法條文 자체가 上程이 되어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前에 逐條審議부터 먼저하면 上程된 것으로 오해가 되어서 이것이 保留냐, 그 자체를 하고 난 뒤에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몇 條 몇 條 되었으니까 몇 條 몇 條는 걸르자 이런 것이 먼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委員長님께서 그것을 좀 염두해 두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市金庫改善委員會가 발족할 때는 第4代 市議員들의 관심 속에서 50日 동안 市金庫를 調査했습니다. 저희들 財務局의 資金運用을 본 결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서 현재보다 더 좋은 여건으로 運營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慣行에 따라, 慣行이란 이유로 稅外收入을 減少시켜 왔습니다. 또한 市金庫 銀行인 韓國商業銀行과 韓國住宅銀行은 적극적인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稅收를 增加 시키지 못했습니다. 本委員도 이 점에

대해서는 財務局과 市金庫에 대해서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고 우리가 어떤 制裁를 가해야 된다고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本委員이 條例를 制定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초 梁敬淑 委員님께서 저희들 보고 말씀하시길 美國하고 日本에서는 條例로 市金庫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 市議員의 품위를 증진시키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條例를 制定하는 데 적극 찬동의 意思를 표시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잊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日本의 地方自治法을 보니까 第 條 및 同施行令 第168條에 의하면 條例 制定權의 委任을 받는데 반하여 우리 地方財政法 第64條 및 同施行令 第72條에서는 이를 委任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市金庫의 指定은 서울市長의 固有의 權限이므로 條例 制定의 上位法에 위반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梁敬淑 委員님께서 아까 어떤 條文이 잘못되었는가를 말씀했는데, 어떤 條文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日本 地方自治法 第235條에 보면 道都府縣은, 우리가 이것은 施行令입니다. 施行令에서 정하며, 金融機關을 指定하되 道都府縣은 公金の 收納 또는 支拂의 事務를 취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施行令 第168條에 보면 道都府縣은 地方財政法 第2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議會의 議決을 얻어서 이찌 노 강코, 그러니까 하나의 金融機關을 指定하여 당해 都道府縣의 公金 收納 및 支拂의 事務를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日本은 어떤 條例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令에서, 第168條 令에서 받아 있습니다. 받아 있는데

저희는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市金庫에 관한條例 檢討報告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읽어 보면 아시다시피 첫째, 이 市金庫를 얘기하기 전에 地方自治法에서 우리 議會가 어떤 것을 條例로 規定할 수 있느냐고……. 條例 第15條의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 내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規定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市金庫에서 죽 보시고 市金庫에 관한 條例 規定입니다.

이것을 아까 어떤 條項에 의해서 반박을 하느냐, 읽어 보십시오.

財政法 第64條에 따르면 金庫의 指定은 地方自治團體長の 固有의 權限이예요.

두 번째, 따라서 市長의 金庫指定의 權限은 地方財政法과 달리, 달리 정하거나 制限된 規定, 예컨대 市議會의 承認을 報告하는 規定 등을 포함하는 條例 또는 規則 등의 法令의 범위를 벗어난 條例 規則이므로 地方自治法 第15條에 위반되어 무효라 이뤘습니다. 法令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法이 정하는 범위내입니다. 法에서 委任을 해주지 않으면, 특히 저희 나라는 大陸法을 가지고 있습니다, 英美法이 아니라. 法에서 정하고 그 못 정한 것을 大統領令이 정하고, 또 大統領令이 미진한 것은 規則에 정하고, 規則에 정하지 않은 것을 條例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法에서 委任받지 않은 法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法에 위배된다 이 말입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서 내용을 다 읽어 보시면 알지만 金庫를 指定하는 方法에 契約問題도 그렇지만, 아까 第72條, 第61條, 第63條에 대해서 전부다 얘기를 했습니다.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金庫指定할 때 地方自治團體長과 金融機關間의 契約의 方法에 의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第72條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은 一般競爭方法……. 制限을 할 수 있다든지 4개의 方法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方法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地方財政法 第61條 契約의 方法은 契約의 目的, 성질, 특수성에 따라 一般競爭方法, 制限競爭方法, 指名競爭方法, 隨意契約方法에 의하여 체결한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또 第63條에 봐도 그래요. 地方自治團體를 當事者로 하는 契約은 國家, 아까 當事者法의 계약의 法律에 준용한다 이랬어요, 그 준용, 梁敬淑 委員이 아까 말씀하시듯이 준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따라서 市金庫에 관한 指定方法을 契約 이외의 方法으로 規定하거나 契約의 方法을 地方財政法,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契約에 관한 法律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르게 정하는 條例나 規則은 法令 위반이며 무효입니다, 저희들이. 이 자체를 서울市金庫의 條例를 만드는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 자체는. 이 法을 읽어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에 條例 制定의 범위, 金庫業務에 관한 事項입니다. 金庫 運營에 관하여서 條例에 制定할 경우에는 地方財政法 및 施行令,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契約에 관한 法律 및 施行令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金庫業務에 관하여 制定 가능하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이 자체가 法令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아닙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 현재가. 그런데 왜 이것을 또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特別會計에 11개 基金이 있습니다. 다 制定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特別市災害救護基金管理條例, 서울 特別市老人福祉基金設置 및 運用條例……. 11개 法은 그 母法인 災害救護法이라든지 地方自治法 第133條라든지 다 이

렇게 委任을 받아서 저희들이 制定하고 있습니다. 委任되지 않은 法을 갖고 저희들이 制定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位相을 증진시키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位相이 떨어질 때 어떻게 우리가 補償을 받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財政分科委員會에서 條例를 制定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경망스럽다는 소리를 듣기는 싫다 이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條例가 적법하다고 그러면 저도 한번 찬성하겠어요, 이 條例에. 적법하다면 찬성하는데 法에 위배되기 때문에 上程을 좀 保留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上程을 保留해서 좀더 심도 있게 한번 더 연구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 條例에 대해서 上程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다른 意見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意見 있으십니까?

(「네」 하는 委員 있음)

네, 李廷義 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李廷義 委員; 法令의 위반기준에 대해서 여기 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地方自治團體의 事務가 아닌 事務나 條例規定 對象事務가 아닌 事務에 관하여 規定한 경우에 法令에 위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문에 法令에 위반한 경우는, 法令으로 이미 規定하고 있는 規制基準보다 강한 規制內容을 規定할 경우에 法令에 위반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이야. 그 다음에 法

수의委任이 있는 경우 그委任의限界를 일탈할 경우에 違反이 됩니다, 委任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委任이 없더라도 條例는 制定할 수가 있습니다.

(「없어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하는 委員 있음)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예요. 法수가 委任이 있는 경우에…….

(「있는 경우에…….」 하는 委員 있음)

아니, 제 말을 들으세요.

法수에 委任이 있는 경우, 지금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그 委任의 限界를 일탈하여 規定한 경우에 法에 違反이 됩니다, 條例가. 指定하는 것이.

그 다음에 法수로 規定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거나 條例로 規定하는 것을 禁止하고 있는 事項을 規定한 것, 그러니까 條例로 規定해선 안 된다고 하는 事項을 할 경우에 違反되고, 條例로서 規定할 事項에 대하여 法수로 條件 또는 制限基準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條件 또는 制限基準을 違反할 경우에 違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큰 테두리를 보면, 法수의 委任 없이 住民의 權利를 制限하거나 義務 또는 罰則을 부과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條例를 制定한다고 해도 住民의 權利 義務를 制限하거나 罰則을 부과하는 그런 事項은 條例로 制定할 수 없다고 나왔고, 굳이 上位法에 委任되어야만이, 나와야만이 條例를 制定하는 法은 없습니다. 그것을 參考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金相男 委員; 저는 法律 論爭은 그런데, 지금 말이죠, 上位法으로 정해 놓은 것을 制限하는 자체가 그게 違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上位法에 金庫는 市長이 指定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市長이 指定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地

方財政法 第61條에 의해서 契約方法이 隨意契約도 가능하다고
이것입니다. 地方財政法에 정해진 契約方法에 의해서 市長이
金庫를 指定하는 데 대해서 審議를 하라, 公開入札만 하라 이
렇게 制限하는 자체가 違法이다 이것입니다. 자꾸 다르게 해
석하시지 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問題는, 우리가 이것을 만들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 行政監査도 있고 모
든 것이 財務局을 언제라도 불러다 우리가 契約書文案에 대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지적도 할 수 있고 是正도
要求할 수 있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論難이 되는 條例를
만들어서 뭐를 우리가 要求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財
務局에 대해서 商業銀行을 불러다 놓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언
제라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問題는, 지금까지 80年을 해
왔지만 우리 나라 金融制度 慣行下에서 우리가 銀行은 말이
죠, 80%가 收納業務입니다. 나머지 市金庫로 들어온 돈을 가
지고 運營하는 것은 財務局에서 하는 것이지, 銀行이 잘못된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金融이 자율화되고 制
度가 많이 改善되니까 特約이라든가 여러 가지 制度를 우리
가 도입해서 우리가 정해진 범위내에서 우리가 執行部가 좀
더 신축성 있게 資金運用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이런 問
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꾸 구태여 法습에 어긋나는 것을 자
꾸 만들려 하는 그 問題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저희들이 監
視와 牽制 또는 監督을 할 수 있는데도 구태여 論難이 되는
이런 條例를 만들려 하는 그것이 좀 問題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李廷義 委員 향후 좀더 檢討하고 우리
가 市金庫問題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監督을 해 나가면

서 이 條例에 대해서 檢討를 하고 保留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意見만 말씀해 주시고 議事進行發言은 삼가해 주시…….

○盧載東 委員;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委員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法律的인 논단은, 適法이나 不適法이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司法機關에서 판단하는 것이니까 일단 保留를 하기로 하고, 제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李亮漢 委員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박상기 辯護士라든가, 그 다음에 임갑인 辯護士라든지 안범수 辯護士 명문으로 이렇게 回信을 해 온 것이 있고, 또 質疑書까지도 添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떤 경우든지 만약에 이 條例가 잘못된 것이라라고 판정이 됐을 경우에 財務經濟委員會에 심각한 타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고, 다만 제가 發議하신 우리 梁敬淑委員한테는 그 동안에 애써서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이 부분의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行政調查委員會의 報告書에다 建議事項으로 집어넣어서 우리의 意見을 표출하고, 우리가 行政調查를 하거나 이러 때 이런 부분을 역점을 뒀서 우리가 制度機能을 제대로 遂行한다고 그러면 우리 財務經濟委員會가 당초에 노렸던 것을 제대로 획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梁委員께서 만약에 問題가 된다고 그러면 第2條 第1項도 빼버리자 이랬는데 사실은 承認이든 議決이든 이것을 빼버리면 사실은 이 條例의 핵심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梁委員이 거기까지 생각하신다 그러면 여기 몇 가지 契約方式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財務經濟委員會가 行

政調査를 통해서 勸告하는 事項으로 집어 넣어서 이것을 한번 던지는 것도 어떠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현실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냉정히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抑何心情을 가지고 이것을 꼭 뭐 해야된다 이런 論理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12月 1日부터 施行을 해서 그럼 競爭入札을 부쳐서 과연 중단없이, 業務에 차질이 없이 과연 市金庫銀行이 第3이나 第4의 銀行으로도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현실성도 우리가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梁委員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것을 빼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勸告事項으로 해서 行政調査委員會 報告書에다 집어넣는 것이 어떠냐, 제가 仲裁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文錫珍; 梁敬淑 委員, 말씀해 주십시오.

○梁敬淑 委員;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그럴 용의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미 討論會에서 제가 條例案을 더 만들어..... 이 條例라는 것이 制度的 장치입니다. 制度的 장치없이 지금 서울 市에 그대로 맡길 수 없다라는 것이 제 條例案을 提出하게 된 동기입니다. 뭐냐하면, 저번 討論會 때 財務局長이 나와서 그 전에 제가 本會議에서 公開競爭入札方式을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質問했을 때, 議會하고 충분히 相議해서 하겠다, 처음엔 그렇게 答辯 했고, 둘째 날에는 公開競爭入札을 포함한 案을 議會와 相議해서 결정하겠다라고 答辯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全 議員, 147名이 앉아 있는 데서 答辯을 했고, 그게 言論報道에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討論會 때 와

서 議會와 단 한 마디 議論도 없이 公開競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公言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화를 해서 隨意契約을 商業銀行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좀 봐 달라, 나를 좀 도와 달라라고 전화로 30分 이상을 저한테 哀乞伏乞 했습니다.

이런 狀況에서 제가, 財務局長은 이미 隨意契約을 하겠다는 것을 결정해 버렸고 서울市民들이 지켜보는 討論會 앞에서 公言을 해 버린 것입니다. 議會랑 議論하겠다라는 것은 완전히 목살당한 것입니다. 이런 狀況에서 制度的 장치로 公開競爭入札方式으로 하라는 것을 文案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이것을 무슨..... 저는 審議냐 뭐 承認이나, 議決..... 제 원래 의도는 議決을 거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많은 辯護士들이 法的인 瑕疵가 없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또 市長은 자기 固有權限을 議會하고 나눠 갖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을 문제삼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것이 法的으로 瑕疵가 있냐, 法律條項에 問題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市長이 지금까지의 權限보다 자기의 權限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소지를 안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또 法律諮問 끝에 審議라는 의미가 아까 李廷義 委員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議論하고 諮問을 구하고 選定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議會와 相議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審議를 거쳐라, 審議를 거친다라면 더 公正한 選定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당신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또는 서울 市長이나 執行部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委員들이 그 부분에, 꼭 뭐 審議 이

부분을 빼야 된다, 第2條第1項이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저는 公開競爭入札을 지금 서울시에서 안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公開競爭으로 해야지만 투명해지고, 또 서울시 財政이 伏魔殿이라는 것도 문제를 좀더 줄일 수 있는 것이고, 또 市長도 솔직히 말하면 公開競爭하면 자신의 位相이 올라갑니다. 市長이 公開競爭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異議를 누가 달겠습니까?

市議員들이 公開競爭해서 투명하게 競爭方式으로 선택했는데 지금까지 80年 동안 했던 방식으로 또 다시 하는 부분을 더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公開的으로 투명하게 한 것을 더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市議員들도 마찬가지이고 市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市長한테도 그러한 어떤 市民들이 더 적극적인 支持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서울시가 公開競爭方式을 採擇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公開的으로 그것을 일방적으로 通報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制度的으로 條例를 만들어서 公開方式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수용할 意思가 없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黃仁明 委員님 意見 말씀해 주십시오.

○黃仁明 委員; 黃仁明입니다.

法律問題가지고 이것이 된다 안 된다, 또 金洪奎 委員 같은 분은 열심히 資料 質疑書도 내어서 여러 辯護士, 어떻게 다 한결같이 안 된다는 意見만 가지고 왔는지 난 참 이상합니다. 내가 알기에 세어 보진 않았지만 大韓民國에 辯護士가 數千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議會도 세 분이나 계시고, 특별히 財務經濟委員會도 金信浩 委員 같은 유능한..... 金信浩 委員 같은 유능한 辯護士도 저희 常任委員會에 있어서 영광입니다. 意見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

리가 重大事案을 보면 大法院에서 소수의견도 나올 수가 있고 憲法裁判所 裁判官 中에서도 다른 意見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것은 法에 違反이니까 그 자체가 안 된다 이런 論理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金相男 委員께서 條例를 왜 이렇게 制定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條例를 制定할 타당성은 提案者인 梁敬淑 委員이 이미 하셨습니다. 충분히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小委員長인 李廷義 委員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5年 동안이면 다섯 번을 3年씩 契約한 것입니다. 날짜만 틀리고 文句하나 修正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타당성에 젖어서 80年 동안 했고 앞으로 또 하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한 50日 동안 調查小委員會를 구성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行政을 하고 瑕疵가 없으려면 분명히 公開競爭入札로 해야 됩니다. 核心은 第2條第1項이 아니라 第3條第1項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第2條第1項에 대한 찬성자인 金信浩 辯護士가 얘기한 대로 修正해서 削除한 修正案대로 原案대로 通過할 것을 저는 正式動議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朴南植 委員님 意見 말씀해 주십시오.

○朴南植 委員; 朴南植 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金庫運營에關한條例案 때문에 本委員도 아침부터 굉장히 深思熟考하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 이 市金庫運營에關한條例案에 보면 公開競爭方式을 원칙으로 하는 찬성에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 뭔가 한번, 다시 한 번 再考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서로의 어떤 기회를 만들으면 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아침에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梁敬淑 委員, 그리고 李廷義 우리 小 委員會 委員長,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 진심으로 그 동안에 서울市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奉仕하는 자세가 너무도 훌륭하고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우선 찬성이나 반대나, 찬성은 찬성 나름대로 市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반대를 하는 쪽이 市民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급하게, 이제 4個月 半밖에 안 됐는데 정말 이 條例를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市民을 위한 진짜 便宜와 福利를 增進시키는데 일조할 것인가 하고 염려를,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동안에 市金庫 80年 동안에, 去來하는 동안에 참 많은 問題點들이 장기적인 독점으로 인해서 있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80年 동안 慣行, 잘못된 점들이 그 속에는 엄청난 것들도 있었으리라고 이렇게 가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이제 그 동안에 우리 地域에서 많은 뜨거운 聲援 아래서 우리가 6.27選舉를 통해서 이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때 그야말로 서울市民을 위해서 무엇을 奉仕할 것인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인도의 간디 首相은 公務를 함에 있어서 단 1전이라도 浪費하고 해서는 안 된다, 會計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좋은 文句의 哲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서울市議會가 서울市 執行部를 牽制하기 위해서 우리 梁敬淑 委員께서 提案한 이 條例案은 너무도 감사하고 우리는 거기에 격찬을 보내야 할 때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반대도 훌륭한 반대들을, 역시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할 때 아침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야, 事務的으로 지금 뭐 이 條例案을 통과시켰을 때 12月 末이면 契約이 滿了되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本委員은 좀 우리가 深思熟考하게 熟知해서 그야말로 한 점의 부끄럼이 없는 서울市民을 위해서 奉仕하는 자세로 가기 위해서는 보다 이것을 좀 保留해서, 保留해 놓고 우리 常任委員 16名이 좀더 더 다루어서, 이제 우리는 與野의 어떤 특성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야말로 우리는 生活政治人으로서 서울市民을 위해서 奉仕하는 자세로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市民을 위하고 훗날 우리 서울市民의 歷史에 빛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條例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保留에 動議를 저는 합니다.

○委員長 文錫珍; 지금 여러 가지 意見이 나오는데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分 이내로 좀 發言을.....

○白南善 委員; 白南善 委員입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委員님께서 그 동안에 해 왔던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애를 썼던 일들을 다 자평하면서 칭찬도 해 주셨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保留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法에도, 法도 門外漢이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禁止된 區域을, 제 생각입니다. 좀 통과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上位法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사실 여러 委員님께서도 몇 분하시고, 아니면 또 우리가 실지 일을 해 나가는데 이런 어떤 條例를 정함으로써 우리 실지 그 동안에 한 80年間 이렇게 해 왔던 그러한 問題를 해결할 수 있

는 方法도 아니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말씀들을 하시고 계
시는데, 사실 이거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 지금 이 내
용은 아주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梁敬淑 委員이나 李
廷義 委員님 만들어 오신 이 내용은 정말로 제가 봐도 더 이
상의 여기서 뭐 빼고 더 追加할 수..... 뭐 이런 내용을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좋은 案을 좀더 深思熟
考하게 處理하기 위해서 保留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
각에서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올립니
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文錫珍; 이제 더 이상 意見 듣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論議를 했습니다. 條例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法律的 專門家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지만 法律的인 부분에서부터 과연 우리가 市議會로서
서울市를 어떻게 牽制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
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도 市金
庫 條例制定에 대해서 여러 가지 檢討案과 辯護士案까지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충분히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안에서 論議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
금 이 條例案에 대해서 일단 發議하신 梁敬淑 委員이 아까
金庫指定에 대해서 第2條第1項을 削除할 수 있다, 削除하는
것을 修正을 動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金信浩 委員이 그
렇게 얘기하셨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 原案에 대해서 修正을 發議하시는 분이 동의하시는 것입
니까?

○梁敬淑 委員; 저는 그러니까 다른 委員님들께서 金庫指定
第2條第1項이 문제가 되어서, 다른 부분은 다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條例를 通過시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다른 委員님들이, 많은 委員님들이 이 부분을 削除한다면 通過를 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을 前提한다면 제가 양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狀況에서.....

(「委員長, 議事進行發言 좀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됐습니다. 더 이상 議事進行發言받지 않고요, 우선 保留하자는 動議가 있었으니까 保留하자는 動議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의 意見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保留하자는 動議를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朴南植 委員님하고 지금 가장 가깝게는 白南善 委員님이 保留하자는 動議가 있었는데 일단 保留하자는 動議에 대해서 再請 있으십니까?

(「네」 하는 委員 있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네, 두 분이 再請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金庫運營에關한條例案, 이 案에 대해서 保留하자는 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意見을 묻겠습니다. 保留하시는데 찬성하시는 委員은 그 자리에서 起立하여 주십시오.

(起立 表決)

(「議事進行發言 좀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앉아 주십시오.

保留하는데 반대하고 이 자리에서 이것을 修正을 하든, 通過하든 이 자리에서 하자 하시는, 保留를 반대하시는 분 起立해 주십시오.

(起立 表決)

앉아 주십시오.

양쪽 意見이 다 7 對 7이므로 保留에 대한 案은 否決되었습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保留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討議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쪽 意見이 다시 갈라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서울特別市金庫運營에關한條例案에 대해서 梁敬淑委員이 發議하고 金信浩委員이 찬성했는데 이대로 通過하자는 案이 있으면 動議해 주십시오.

(「通過하려면 贊反討議 다시 해야지」 하는 委員 있음)

(「案도 확정 안 됐는데 무슨 뭐……」 하는 委員 있음)

案 자체는 올라 와 있는 것 아닙니까? 保留案 자체는 否決됐으니까요…….

(「否決된 것은 맞습시다만 이 案이 確定案이나 이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하는 委員 있음)

앉아 계십시오.

이 案에 대해서 動議해 주십시오. 動議 없습니까?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네.

○金洪奎 委員; 이 중요한 條例案을 정말 拙速處理할 것입니까?

○委員長 文錫珍; 拙速處理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討議했고…….

○金洪奎 委員; 금방 여기서 修正動議案을 내놓는 것은 拙速處理 아닙니까?

○委員長 文錫珍; 修正動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議會 안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얘기를 들어 보세요.

(「修正動議가 나올 정도로 檢討를 안한 案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檢討하자는 얘기이예요, 그러면…….」 하는 委員 있음)

항상 議案은 修正動議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委員들의 見解가 다르면 修正動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修正動議가 나오면 拙速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討議를 한 것은…….

○金洪奎 委員; 이거 보세요, 찬성자도 이거 읽어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찬성의 사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와서 바로 本人이 修正을했어요, 修正 提議를 했어요.

○委員長 文錫珍;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밝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거기에 대해서 異議가 있으시면 반대하실 때 반대하시고 찬성하실 때 찬성하셔서 우리 委員會 안에서 決議를 통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場內 騷亂)

(「委員長, 議事進行發言하겠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네, 議事進行發言해 주십시오. 盧載東 委員님 議事進行發言해 주십시오.

○盧載東 委員; 停會를 하고 다시 續開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委員長 文錫珍; 停會하자는 動議가 들어 왔습니다. 同意하십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대로 해요, 시간도 없는데…….」 하는 委員 있음)

(「잠깐 停會를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그냥 합시다, 나는 일어나면 가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합

시다」 하는 委員 있음)

(「왜냐하면 文句修正問題도 있고, 예를 들면 削除하는 問題도 있고, 아까…….」 하는 委員 있음)

(場內 騷亂)

停會하자는 動議가 있습니다. 再請 있으십니까?

(「반대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아니, 委員長 固有權限이에요, 停會하시는 것은, 停會를 하고 안하고, 同意가 필요 없는 것이고…….」 하는 委員 있음)

(場內 騷亂)

李廷義 委員님 얘기해 주십시오.

○李廷義 委員; 서울特別市金庫運營에關한條例案에서 文句 修正이라든가 또 修正에 관한 여러 가지 意見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修正하는 條件으로 可決을 한다면 停會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대로 할 것을…….

(場內 騷亂)

○委員長 文錫珍; 우리가 충분히 討議했으니까 停會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金庫運營에關한條例案을 여기에 上程을 했는데 이 案에 대해서…….

(「反對討論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충분히 우리가 贊反討論 아까 했어요. 贊反討論했으니까…….

○金勝建 委員; 案件이 확정이 안 됐었어요. 아까 同僚 李亮漢 委員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案이 確定案이라는 確定案도 안 나왔어요. 修正動議할 수도 있다, 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었지, 確定案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충분히 贊成, 反對討論이 있었습니까?

○委員長 文錫珍; 上程된 案件 아닙니까? 그리고 중복되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金勝建 委員; 지금 아까 李亮漢 委員께서 말씀하시는데 委員長 議事進行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案이 지금 上程됐느냐 안 됐느냐 결정도 안 난 상태에서 몇 條 몇 項이 어떻게 되었느냐 해서 말이 바뀌었지, 議案이 上程된 적이 없어요.

○委員長 文錫珍; 이미 이 案은 오늘 主題議案으로 梁敬淑 委員이 發議하고 金信浩 委員이 찬성해서 議案으로 上程된 것입니다. 案이 上程 안되다니요.....

(「아니, 지금 찬성자가 修正案을 냈지 않습니까?」 하는 委員 있음)

(場內 騷亂)

여기에 대해서는 意見を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金勝建 委員; 委員長님, 좋습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上程했다면 좋은

데 反對討論 한 번만 더하게 해 주십시오.

○委員長 文錫珍; 네, 反對討論하십시오.

(場內 騷亂)

○金勝建 委員; 좋습니다. 저도..... 잠깐만요,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것이.....

(「本會議에 가서 창피당해.....」 하는 委員 있음)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意見を 들어서 하세요.....

(「그만 해요」 하는 委員 있음)

○金勝建 委員; 同僚委員께서, 李亮漢 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아까 議案이 上程이 안 됐어요. 그런데 委員長께서 上程됐다고, 이미 이 案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습니다.

니다. 反對討論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것 두 번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계셨던 委員님들 중에서 몇 분이 保留하자고 同意안을 내시는 분들의 내용은 좋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論難이 문제되고 實定法 위반이니, 뭐 上位法위반이니 하니까 시간을 갖자, 그리고 분명히 저희가 진행하는 동안에 이 條項은 뺄 수 있습니다, 이 條項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이 왔다 갔다 했어요, 현실적으로. 어느 案이, 案이 올라온 것은 이 案이었지만 修正動議할 수 있다, 없다고 意見開陳이 분명히 됐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현재는, 이 案이 確定案이라고 그러면 저 할말 없겠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한 3시간, 4시간 동안 했을 때 우리는 確定案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왜 反對討論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上位法에 위반되기 때문에 法律上 이것은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반대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왔던 것처럼 公開競爭, 이거 해야 됩니다. 제가 봐도 해야 되고, 아까 이 發題者가 얘기했던 梁敬淑 委員이 質疑하고 財務局長이 答辯했던그 태도가 바뀌었어요, 분명히. 그러나 지금 현재 과연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公開競爭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통과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委員長 文錫珍; 反對討論 마치셨습니까?

○金勝建 委員; 아니, 말씀 들어 보세요. 通過해도 좋으니까 제가 反對討論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法에 틀린데, 지금 法에 맞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 가지고 이것

을 했는데, 어떻게하든지 살려 보자, 살려 보자, 살려 보자 해서 委員들이 말씀이 있었던것이지, 어떤 確定案이 나왔던 것이 아니고, 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분명히 제 速記錄에 는 남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얘기할게요」 하는 委員 있음)

(「내가 얘기할게요」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贊反을 제가 골고루 드릴테니까, 골고루 드릴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郭順英 委員, 먼저 하십시오.

李亮漢 委員님, 發言權을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場內 騷亂)

지금 郭順英委員 얘기할 차례입니다. 들으세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委員長의 권위로써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느 편을 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분명히 案件을 保留하자는 動議도 왔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意見을 물어서 贊反이 똑같아서 否決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案件이 다시 上程이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贊反討論하시고 修正할 것 있으면 修正해서 通過될 것 있으면 통과되고, 안 되면 否決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會議에 대한 원칙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기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郭順英 委員님.

○郭順英 委員; 本會議에서 망신을 당하지 말고 여기에서 잘 생각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망신은 당하고 안 당하고는 나중에 가서 봐야 알아요. 本會議場에서 議員이 147

名 中에서 여기에서 지금 찬성하는 쪽으로 다 기울여서 돌아갔다고 볼 때는 여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망신이지요. 그렇다고 볼 때는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公式席上에서 財務局長이 언사한 대로 안 되고 우리 財務委員會를 무시한 그런 언사를 했다고 볼 때는 이것은 어떤일이 있어도, 이것은 執行部の 심금을 울리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條例가 制定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뭐 第2條第1項 修正, 이것보다는 더 강력하게 원했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면 修正해서, 조금 文句를 고쳐서라도 이게 條例가 制定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委員長 文錫珍; 그 다음, 朴南植 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朴南植 委員;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반대쪽도, 찬성하는 쪽도 전부 우리 서울市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쪽으로 나온 것으로 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委員님께서 정말本會議場에 가서 망신을 당할까..... 그러니까 그런 망신을 당하지 않기위해서 再檢討를 해서, 더 熟知해서, 훌륭한 百年大計를 위해서, 서울市民을 위해서 좋은 條例案을 내놓자는 것이 제 뜻이올시다. 그래서 이렇게 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얘기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金相男 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金相男 委員; 조금 전에 우리 梁敬淑 委員께서 財務局長하고 通話를 했다, 財務局長이 隨意契約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상당히 감정적으로 끌어 가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財務局長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場內 騷亂)

글쎄,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우리가, 委員들이 議案을 審議하는데 財務局長 말을 끌어 들여서 분위기를 이렇게 격양시키고 말이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梁敬淑 委員님께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第2條 第1項의 審議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아까 우리 유일한 法律家이신 金信浩 委員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檢討가 없었다는 것이 立證이 되는 것이고, 둘째, 第3條第1項에 公開入札을 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核心事項이고, 다른 事項은 常識線입니다. 그렇다면 이 第3條第1項 公開競爭方式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上位法에 보면 市長이 金庫를 指定하고, 또다시 얘기하지만 契約方法에 의해서 한다, 그 契約에 대해서도 第64條에 契約方法은 몇 가지 方法이 있습니다. 그것은 市長이 地方財政法에 의한 契約條項에 의해서 자기가 指定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上位法에 위배되는 것이 거의 확실한데도 이것을 자꾸 주장하시고, 또 財務局長하고 通話한 내용가지고 분위기를 몰아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委員님들이 말이죠, 우리 열여섯 財務經濟委員會의 位相과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냉정하게 檢討하고, 다시 충분히 생각한 후에 法律的인 檢討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이런것을 충분히 檢討하고, 다시 충분히 생각한 후에 法律的인 檢討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檢討한 후에 다시 이것을, 이 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80年 동안 金庫業務라는 것은 金庫銀行은 주로 收納業務가 주입니다. 그리고 資金運用은 執行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行政調查委員會에서 調查해서 문제로 우리가 摘示된 것은 住宅銀行이 몇 年 동안의 利子 6億 8,300萬원,住宅銀行 것 滿期 後 경과 때문에 利子の 損失을 봤다, 商業銀行은 제가 알아보니까 1件이 그래서 한 300萬원인가 損失을 본 것이 있었어요. 그 외에는 찾지 못했는데, 없어서 찾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외 다른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金融市場이 자율화되고 또 우리가 각 執行部에서 여러 가지 資金運用의 問題,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執行部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히 좀 현실을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감안하셔서 이 문제를 오늘 감정적으로, 또는 이렇게 졸속으로 處理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公開入札問題가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李廷義 委員님.

○李廷義 委員; 우리가 發言을 함에 있어서 모르는 事項이라든가 내가 參與하지 않은 事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梁敬淑 委員이 얘기한 것 중에 물론 전화로 온 것도 있지만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公開席上에서 發言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을 金相男 委員 주지시켜.....

○金相男 委員; 隨意契約을 아까 전화로 얘기했다고 그랬지

언제 隨意契約한다는 얘기를 公開席上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梁敬淑 委員; 했어요.

○李廷義 委員; 公開 討論會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金相男 委員; 언제 隨意契約.....

○李廷義 委員; 토론회에서 얘기 했습니다.

제 얘기에 이유를 달지 마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했고, 아까 우리 朴南植 委員께서 참 좋은 案이다, 그런데 좀 保留하자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사실상 이것을 지금 通過하자는 사람과 통과를 좀 保留하자는 意見이 있는데 어떤 問題가..... 이 案이 좋다면 通過시켜야 됩니다. 단,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금년 12月末日字에 契約이 滿了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朴南植 委員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단 이 附則에 1995年 12月 31日字 滿了되는 契約에 한해서, 契約에 한해서는 그날로부터 6個月을 延長할 수 있다라는 條項을 넣으면 그동안에 충분히 우리가 이제 OCR問題라든가 또는 예를 들면 競爭方式이라든가 이런 어떤, 서울시가 어떠한 방식을 지정하는데 따른 어떤 條件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檢討해서 檢討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附則에다 그것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金信浩 委員이 辯護士이기 때문에 金信浩 委員의 말씀을 충분히 존중해서 審議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하는 것은 인정하면서, 딴 것은 아까 上位法에 무조건 문제가 있다라고 무조건 얘기한다면 그것은 도대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金信浩委員도 하나의 委員으로서

發議를 한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전체의 意見을 들어서 可否를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만약에 金信浩 委員을 辯護士로 생각한다면 모두를 다 辯護士로 인정해서 결정을 해야만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金洪奎 委員님께서 불가한 것을 보면, 여기에 보면 承認이라든가 이런 말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까 黃仁明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辯護士들의 贊反이 있어서, 또 우리가 해 보지도 않고 論難이 있을 것이다, 論難이 있다, 問題가 있다라고 결론을 낸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해 낼 것이 없습니다. 해 낼 것이 없으니까, 일단은 충분한 檢討가 됐으리라고 이 修正動議案을 公式 提出합니다.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盧載東 委員님 意見받기 전에 修正動議案 內容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附則을.....

○李廷義 委員; 附則, 지금 "이 條例는 1995年 12月 1日부터 施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1995年 12月 31日 滿了되는 이 契約에,

市金庫契約에 한해서 滿了日로부터 6個月 延長할 수 있다.....

○委員長 文錫珍; 그 事項뿐입니까?

○李廷義 委員; 네.

○委員長 文錫珍; 金庫指定은 그냥 그대로 이 事項대로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하는 委員 있음)

일단 案 들어온 것은 받고요, 그리고 盧載東 委員님 먼저 하셨으니까

盧載東 委員님 먼저 얘기를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盧載東 委員;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保留案 들어 왔을 때도 可否가 同數였습니다. 그러면 신중하게 公正性을 기한다고 그러면 委員長이 이것은 保留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檢討를 했어야 옳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중대한 事案을 두고 委員長이 可否同數일 경우에 자기 職權을 行使하는 것은 자기의 權限이라고 하지만 그런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贊反討論을 우격다짐으로 해서 여기서 그냥 通過시켜 버리자, 이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金信浩 委員이 辯護士이고 法律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黃仁明 委員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法律問題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는 機關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하는 그런 意見도 많고 그것이 오히려 지배적이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기에 12月 1日부터 施行하는 것을 6個月 동안 延長한다고 이랬는데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市 執行部에서 비토를 놔 버리면 財務經濟委員會는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이 條例를 우리가 만들더라도 될수 있으면 法令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제대로 議會에서 牽制機能을 할 수 있는 그런 條例를 건전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역점을 뒀어야지, 되고 안 되는 것은 차후에 두고 한 번 부딪쳐 보자, 이런 모험은 서울시議會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서 한 번

熟考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이 條例가, 지금 예를들면 第2條第1項도 削除를 해 버리고, 또 그렇습니다.

金信浩 委員…….

(「削除에 同意하지 않았어요」 하는 委員 있음)

아니, 그러니까 아까 梁敬淑委員 發議하면서 審議라는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면 빼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梁敬淑 委員; 거절했습니다. 분명히 거절했어요.

○盧載東 委員;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財務經濟委員會가 梁敬淑 委員 財務經濟委員會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기 3年이라고 한다면 3年으로 하지, 3年이내에 한다, 이게 무슨 애들 동창회 規則 정하는 것입니까? 期限이 3年이면 3年인 것이지, 그 다음에 公開競爭方式으로 한다, 公開는 問題가 있어 競爭方式으로 한다, 이렇게 뜯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通過시켜 보겠다고 하는 이게 무슨 작당이나 이거예요. 왜 10分 동안 停會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研究하고 論議하고 계속밀어붙이는 사람만 선이고, 여기서 차분하게 좀 論理를 전개하려고…….

○委員長 文錫珍; 조금 이성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盧載東 委員; 反對意見を 내는 것은 안 된단 얘기입니까? 우리가 議事를 그렇게 진행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한 10分 동안 停會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감정을 누르고 다시 한 번 論議할 것을 제가 다시 提議를합니다.

○委員長 文錫珍; 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可否同數가 됐을 때, 제가 拒否한다기보다도 可否同數가 됐을

때 기본적으로 否決하는 것이 基本 常識에 맞기 때문에 제가 否決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여러분께서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取捨選擇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우리 委員會에서 可否同數가 나오면 항상 否決시키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確言을 해 드립니다.

郭順英 委員님.

○郭順英 委員; 梁敬淑 委員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서울特別市金庫運營에關한條例案을 여기에 上程을 했는데 여기에서, 여기 나와서 修正도 할 수 있다, 또 어떤 文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저거한다, 所信을 딱 가지고 나와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자기 所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修正한다든지 어떤 것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은 미리, 事前에 檢討했어야 돼요. 그러기 전에 여기 나와서 어느 분들이 얘기하니까 숫자상으로 이렇게 봤을때 그 얘기를 집어넣었을 때 밀릴 것이다 할 때 그것은 빼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동의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은 빼야 하고 하는..... 그 文句가 제일 잘됐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절대로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저는 이 原案대로 表決에 들어갈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文錫珍; 李亮漢 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李亮漢 委員; 李廷義 委員님께서 附則事項으로 6個月을 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商業銀行 OCR센터를 갔다 오면서 서울시 電子計算所에 가서 所長님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豫算을 더 줄 테니까 우리 서울시가 어느 정도의 期間을 가지면 할 수 있느냐? 公開競爭入札을 저도 원합니다. 원칙으로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지요. 하는데, 公開競爭入札이라는 것이 지금은 안됩니다. 왜 안 되느냐?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왜? 한 사람은 OCR센터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안 가지고 있는데, 1日 200億원에서 230億원의 收入을 6個月 동안어디에다 두자는 얘기에요, 예를 들면. 안 넘겨줍니다. 電子計算所 所長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年이 걸린다 그랬어요, 1年이. 1年 동안 서울시가 處理하는 것이 5,300萬件이에요. 電子計算所가 處理하는 것이 3,800萬件입니다. 1,500萬件을 저희들이 公開競爭 부쳤을 때 1日 200億원의돈을, 1兆원이라는 돈을 공중에 띄웁니다, 預金도 못해요. 이것은 누가手記로 적을 것입니까? 제가 아까도 들어오기 전에 梁委員님과 얘기했습니다. 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화를 내시는데, 저도 公開競爭하고, 전부 事前承認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市議員이 市長이 承認받도록 하고 位相도 서고, 품도나고, 품위도 나지요.

그러나 現行法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法을 이렇게 고쳐달라고 建議를 내고, 建議된 얘기 내에서 우리가 條例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혀 電子計算所 所長에게 물어보면 1年 뒤에 한다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電算센터를 맡겨서 6個月만에 만약에..... 다른 會社에 주어야 6個月만에 나올 것 아닙니까? 어느 會社를 選定하면 그 會社를 選定하는 동안에 6個月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商業銀行이, 누가 6個月동안 契約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 엉뚱한 얘기를 해요. 商業銀行 契約은 3年입니다. 6個月 契約 누가 해요. 자빠집니다. 그럼 銀行 選定도 안 됐어요.

市金庫 어디에 할 것입니까? 그러려고 하면, 제가 지난 번에 얘기했습니다. 1年 동안 우리 電子計算所에 돈을 쥐서 5,300萬件을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난 뒤에 公開競爭에 부치자 이거예요. 왜 못 부쳐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 때는 지금 利率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왜 많이 받느냐? 44名의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돈만 갖다주면 돼요, 預金만 하면. 이 사람들이 電算處理費用을 요새 1주일치 다 받아먹고 있어요, 6.5日. 이러한 病弊는 서울시 자체가 옛날부터 잘못 되어 온 것이예요. 그러면 충분한 時間을 갖고, 1年이면 1年, 1年 半이면 1年 半 뒤에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당장 하자 이거예요, 바꾸자 이거예요. 바꾸었을 때 어느 銀行이 맡는다 말입니까, 지금? 맡을 銀行 있어요? 자신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同意해 드릴게. 맡을 銀行 있으면, 지금 당장 바꾸어서 맡을 銀行 있으면.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理想만 갖고 사는 것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자고요.

○委員長 文錫珍; 委員님들 잠깐, 감정적으로 서로 대치하지 마시고 理性을 좀 회복해 주시고, 表決에 앞서서 10分間 停會를 갖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8時 59分 會議中止)

(22時 14分 繼續開議)

○委員長 文錫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저희가 몇 분 앉아 계시지 않지만......

(「委員長님!」 하는 委員 있음)

오늘 여러 가지로 會議進行에 있어서 유감된 事項이 많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우리 財務經濟委員會에서 表決에 관련된 事項으로 인해서 서울特別市議會에 나와 있으면서까지 會議室에 들어오지 않는 이런...... 會議에 있어서 기본적인 參席을 하지 않는, 議會主義原則을 지키지 않는 이런 行態를, 서울시議會 議員들에서부터 問題가 있다고 하면 이 잘못된 과거의 政權과 그 때 만행되었던 잘못된 政治風土를 배운 이러한 모든 것들이 是正되어야 한다는 것을 促求하고, 향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停會時間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다시 意見을 모으고, 서로 收斂해 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 양보도 하고, 이 會議場에서 公式的으로 다시 輿論하기 위해서 여러 委員님들과 함께 反對되는 意見까지도 내가면서 이 자리에 參席하기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밤 10時 15분이 넘는 이 時間까지도 서울特別市議會 建物 안에 있으면서 會議場에 不參하는, 결코 議會主義를 신봉하는 자세가 아닌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委員會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 번 注意를 促求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參席한 委員數로는 議決定足數가 되지 않기 때문에 議決은 거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散會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意見을 잠깐 듣고 散會하도록 하겠습니다.

意見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李廷義 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李廷義 委員; 李廷義 委員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3個月에 걸쳐서 이 어렵고 험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作品을 만드는데 이만한 진통도 겪지 않고서는 우리가 좋은 결과를 導出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가, 우리의 目標가 있다 하더라도 순서가 있고, 또 지금 비록 미흡하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또 時間을 두고 할 수가 있습니다. 最善이 아니면 次善을 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組織 아래 있기 때문에 내 意見과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調律을 통해서, 우리가 停會를 통해서 意見 開陳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案을 導出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다 버리고, 또 이제 그 동안에 委員長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좋은 案을 내서 停會 동안에 다시 타이핑을 치러 보냈는데, 보내는 過程에서 한두 사람의 意見을 들어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본래의 目的이 깨지는 것이고, 이 目的이 여기서 깨지는 것이 問題가 아니라 앞으로의 議政活動에 이것은 엄청난 問題點으로 끝나고 맙니다. 오늘 하루 이것이 問題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議政活動에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 이것을 탓할 것이며, 누구를 원망할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問題입니다.

다들 내 意見과 틀리다 하더라도, 오늘 내 것이 성취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지금 부득이 條例를 만들겠다는 사람과 條例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사람과, 또 條例에 問題點이 있다는 사람과, 保留하자는 사람과, 原案대로 하자는 사람 모두의 意見을 調律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委員長님이나 우리 모든 委員들이 다시 한 번 단 5分이라도 停會를 하고 그 原案, 다시 우리 懇談會에서 委員長님과 몇 분이 提案했던 事項을 가지고 타이핑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별 異議가 없습니다. 異議가 없고, 예를 들면 主張

했던 分의 意見, 또는 반대했던 分의 意見 모두를 다해서 우리가 懇談會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그 案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다음에 우리가 時間을 두고 더욱 더 좋은 案을 導出해서 다시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그렇게 하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밖에 있는 委員님들이나 또는 안에 계시는 委員님들이 정말 저의, 調査委員長으로서 그 동안의 이 진통을 오늘로서 마감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郭順英 委員님.

○郭順英 委員; 條例案 上程에 대해서 아까 表決에 부친 것에 대해 반반이었습니다. 거기에서 文句가 바뀔 때에는 한 사람이 되었던 두 사람이 되었던간에 그 文句에 대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분명히 의논이 됐어야 돼요. 여기에 나와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앉아 있는 사람은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 사람 두 사람이 그 案에 대해서, 새로운 修正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가지고 論理的으로 따진다고 볼 때에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問題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뭐 우리가 막말로 포 떼고 차 떼고 다 떼고 나면 그런 條例는 차라리 制定이 안 되니만 못하다. 남이 볼 때 웃어요. 차라리 처음에 강력하게 밀었던, 우리가 얘기한 것이 이 速記錄에 記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우리 意思表示를 했고, 또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問題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오늘 條例 制定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 안 된 사람들의 모든 저것을 해서 次期에 어떤 會議나 어떤 것을 할 때에 問題點이 된다고 하는 것은 論理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것을 양보할 때에

는 분명히 한두 가지는 서로 意見 調整이 되어야 됩니다. 公開競爭入札 問題에 대해서는 전부 다 同意했던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빼고, 저것 빼고 다 빼면 무엇으로 條例 上程한답니까? 우스운 얘기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李廷義 委員; 다시 한 번 제가 또 意見 좀 開陳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금 郭順英 委員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公開競爭方式이 上位法에 저촉된다는 論難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公開競爭方式에 대해서 上位法에 저촉이 되는지 아닌지, 우리 모든 16名 委員이 다시 한 번 檢討해 볼 수 있는 期間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論難을 빚고 있는 것은, 우리가 時間만 충분하면 충분히 檢討를 해서 했으면 저도 딱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금년말 契約이 滿了되는 이 時點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勸告라도 듣고, 또는 우리가 意見聽取라도 들을 수 있는, 이것이 상징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對外的으로, 또는 서울市에 警覺을 주는 의미에서도 나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選定基準도 객관성있게 서울市長이 이번에는 選定하리라고 보고, 그 뒤에 있는 情報 保護問題라든가 運用 狀況報告 이런 것도 저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公開競爭과 審議를 빼는 데에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그 問題가 上位法에 저촉된다는 反論과 또 여기 그것을 가지고 檢討했던 분들의 檢討意見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問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檢討를 해서 다시 그것을 上程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時間을 두고 上程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時點

에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모두 公開競爭方式에 대해서는 異議를 단것이 없습니다. 다 해야 된다 하나 上位法에 저촉되어서 결국 論難의여지가 있고, 또는 그 上位法の 저촉에 의해서 執行을 안했을 때 오는問題點을 指摘한 반대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檢討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셔서 네 사람에게 委任했던 原案대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郭順英 委員; 上位法 違背, 違背 하는데, 法은 國民이 만드는 거예요. 法을 審判하는 것은 檢·判事가 審判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과연 여기에서 上位法 違反이 되는가, 뭘로 證明합니까? 上位法 違背, 違背 하는 問題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審判할 問題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어떤 問題가 提示가 되어서 法에 의해서 法の 審判을 받을 때만 해도 우리는 충분한..... 서울市民 千二百萬의 代辯을 해줬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黃仁明 委員님, 意見 말씀해 주십시오.

○黃仁明 委員; 黃仁明입니다.

李廷義 小委員長님한테 조금 유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 50日 수고하시면서 李廷義 小委員長이나 우리 文錫珍 委員長이나 梁敬淑 幹事나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고, 처음부터 이런 저런 問題가 露呈이 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저는 못했지만 몇 분이 충분히 諮問도 구하고, 많이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冒頭에 나오지 않고 이제 會議가 끝나서 散會할 이즈음에 이런 問題가 나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 많습니다.

그런 問題를 다 가지고, 알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郭順英 委員도 말씀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論難은 우리가 결정할 問題는 전혀 아닙니다. 아까 金洪奎 委員이 다섯 名 辯護士한테 諮問을 구했는데 모두 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 梁敬淑 委員이나 金信浩 委員이나 이런 사이드에서 諮問 구한 바에 의하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名의 辯護士가 옳고 그르다 해도 이것은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말이 이즈음에 왜 나오면서, 또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같이 있지 못하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두 가지 제일 중요한 案, 審議를 거친다 이 부분하고, 第2條第1項하고 第3條第1項이 완전히 날아간 狀態에서 그 條例라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상징적으로 條例를 만들었다 하면 그것은 그만큼 時間을 버리고 수고했다 이런 가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대를 하는 立場인데, 그 부분은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상은 제가 理性을 잃고 言聲을 높인 것이 아니라 그런 條例를 制定하려면 안하는것이 더 낫습니다. 물론 아까 郭委員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常任員會에서 얘기할 때 委員들 發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그 다음에 建議書, 請願書 이런 것 안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그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지, 어떠한 結末..... 기왕에 議案이 提出되고, 常任委員會에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것을 結末을 못 맺고 반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처음에 나온 얘기, 이것이 上位法에 위반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결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듯한 小委員長의 發言은 굉장히, 심히 유감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黃仁明 委員; 오랜 時間 동안 우리 委員들이 反對意見을 提示하고 또 찬성하는 쪽에다 그것을 다시 종합해서 合議點을 導出하는 그런 過程을 걷다가, 다시 다 되는가 싶더니 이렇게 와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16名 委員들 중에 15명이, 많이도 참석을 했는데 밤늦은 時間까지 이렇게 된 것이 못내 섭섭하고 마음속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우리 財務經濟委員會에 우리 國民會議 所屬 委員들이 여러분이 많이 계시지만 단합되지 못하고 뿔뿔이 헤어지고, 또 생각들을 달리해서 反對意見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保留를 主張하는 사람, 이렇게 있어왔습니다. 委員長도 마음을 굽혀가면서 合議導出을 위해서 양보를 요구하고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참담하게 끝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서울特別市 議會主義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참 환멸을 느낍니다. 저는 아직까지 議會活動을 제대로 하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배워가면서, 좀 경험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는데, 이렇게 해서는 재미가 없고, 나올 마음도 없고, 나올 마음도 없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우리 議論을 하고, 자기 의견을 좀 죽이고, 진짜 表對決을 할 수 있으면 表對決로 승복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 財務經濟委員會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黃仁明 委員;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네.

○黃仁明 委員; 黃仁明입니다.

오늘 물리적으로 우리 條例案이 財務經濟委員會 議決을 거

치지 못해서 내일 모레 20日 本會議에 上程이 안 되면 어차피 우리 第4代 財務經濟委員會 손에서는 이미 떠납니다.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오늘 비록 우리가 監視하고 牽制할 수 있는 裝置를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기 계신 여덟 분 委員들, 밖에 계신 분들도 어찌면 그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쓸데없는 바람인지 몰라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80年 동안 慣行으로 해 오고, 또 묵인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도, 유착됐던 부분도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制度的으로 마련 못하는 오늘 立場이 서글픕니다. 12月 10日, 며칠 안 있으면 아마 3年 동안 서울 特別市와 商業銀行하고 住宅銀行이 金庫契約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남았습니다. 條例를 制定못하고 다만, 宣言的인 의미의 어떤 決議文이나 請願書를 못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부터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약 한 1年 半 동안 財務經濟委員會를 맡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남은 여덟 名 委員들은 우리가 이런 아쉬움을 저버리지 말고 철저히, 우리가 委員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義務를 다해서 앞으로 監視하고, 千百萬 서울市民의 權利를 위하고, 또 稅外收入을 늘려서 稅金에 輕減을 주는 이런 역할을 다한다는 다짐을 갖고, 오늘 이런 마음을 각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여전히 우리 자리가 아직 차지를 못해서 이제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散會를 宣布해야 할 것 같습니다.

散會를 宣布하기 전에 梁敬淑 委員께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또 金信浩 委員께서 찬성해 주신 서울特別市金庫運營에關한條例案이 議決定足數 부족으로 表決까지 가지 못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案에 대해서 따로 읽지는 않지만 會議錄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議決定足數 부족으로 우리가 지금 議決을 거치지 못한 처음 提出했던 서울特別市金庫運營에關한條例案은 따로 낭독하지 않더라도 速記錄에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參照)

서울特別市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

(뒤에 실음)

.....
○委員長 文錫珍; 늦은 時間까지 出席해 주셔서 좋은 意見을 말씀해 주신 우리 財務經濟委員會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財務經濟委員會 會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22時 33分 散會)

○出席委員

文錫珍 鄭水華 李亮漢

郭順英 金廣洵 金信浩

金洪奎 白南善 梁敬淑

李廷義 黃仁明 金相男

金勝建 盧載東 朴南植

○專門委員

安錫洙